

대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장학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장학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하며, 이에 대한 업무는 학생처장이 총괄한다.

제3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정해진 기간 내 첨부서류 업로드 포함)

제4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장학금의 구분)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등록금, 기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등록금)의 종류와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7조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중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

제8조 (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금 수납 시 납입금의 일부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수혜 여부가 등록금 수납 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장학금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소정 기간 내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이전 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자(근로장학금에 한한다.)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한 자
5. 휴학이나 제적된 자 신설(2016.12.14.)
6. 석사 등록횟수가 4회(학기)초과자, 박사 등록횟수가 6회(학기)초과자 신설(2016.12.14.)

제10조 (장학금 지급의 제한) ① 모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12.14.)

② 교내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려운 장학생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개정(2016.12.14.)

③ 이중 수혜 또는 3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

다. 다만, 기 수혜자 중 근로장학금, 생활비(생활비 보조) 명목의 장학금, 도서 지원 장학금, 기숙사 지원 장학금, 봉사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 학업 장려비 성격 장학금, 대가성 장학금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2016.12.14.)

제11조 (장학금 수혜 유효기간) 장학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한다.

제12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